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0-58호
2020. 7. 3.(금)

차 례

고 시 (2)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고시 제2020-73호)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74호) 2

공 고 (5)

- 공시송달공고(공고 제2020-717호) 3
- 공시송달공고(공고 제2020-721호) 6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723호) 7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724호) 11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독촉) 고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공고 제2020-730호) 14

입법예고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725호) 16

공 람									
--------	--	--	--	--	--	--	--	--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피허가자	소재지	지목	지적(㎡)	변경허가 내용			
					목적	점유 면적(㎡)	허가기간	
							당초	변경
2020-09 (20.7.2.)	장*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18번길62, ***동***호)	장동 844-1	하천	1,003	진출입로	17	'15.8.8.~ '20.8.7.	'20.8.8.~ '24.12.31.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오정동 343-6	대전천북로 246	2020. 7. 3.	건물신축	대전천의 북쪽에 위치한 천변도로	
법동 284-10, -7, -9	중리북로 46	2020. 7. 3.	건물신축	행정구역명(중리동)을 반영	
미호동 398	대청로 466	2020. 7. 3.	건물신축	대청댐의 명칭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7월 3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0. 7. 3. ~ 2020. 7. 17.(14일간)
4. 기타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042-608-6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소유자 (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주)다우***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인삼약초공단로 *	176허****	2020.05.15 03:25:15	석봉동 770 부근	2020.06.04	2020.06.05	이사불명
2	박**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22번길 21, 2**호(봉산동)	01너****	2020.05.30 15:39:52	오정동 705-40 부근	2020.06.04	2020.06.11	폐문부재
3	우**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56-8, 4**동 11**호(판암동, 주공아파트)	대전80더****	2020.06.01 20:12:47	오정동 753 부근	2020.06.08	2020.06.10	폐문부재
4	차**,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0번길 77, 1**동 3**호(목상동, 평화로운아파트)	63노****	2020.06.02 06:18:28	목상동 207-25 부근	2020.06.08	2020.06.10	폐문부재
5	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1**동 5**호(읍내동, 현대아파트)	34수****	2020.06.02 20:55:07	읍내동 59 부근	2020.06.08	2020.06.10	폐문부재
6	허*	대전광역시 동구 흥룡로 41, *동 3**호(가양동, 가양하이츠)	26오****	2020.06.04 21:39:37	비래동 524 부근	2020.06.08	2020.06.11	폐문부재
7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 5*(석봉동)	383로****	2020.06.05 09:44:36	상서동 828-2 부근	2020.06.08	2020.06.10	폐문부재
8	임**	경기도 오산시 매홀로 18-1, 2**호(굴동)	45어****	2020.06.07 21:10:03	상서동 산 47-25 부근	2020.06.11	2020.06.18	폐문부재
9	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내추로 3*-*	13머****	2020.06.08 00:21:40	신탄진동 733 부근	2020.06.11	2020.06.19	폐문부재
10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1길 11, 3동 3**호(대화동, 세원풍남아파트)	50서****	2020.06.09 06:20:06	대화동 37-11 부근	2020.06.11	2020.06.18	폐문부재
11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492번길 60, *동 2**호(비래동, 선인아트빌라)	40어****	2020.06.09 08:06:25	비래동 115-4 부근	2020.06.11	2020.06.18	폐문부재
12	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34번길 15, 1**동 9**호(덕암동, 덕암마을아파트)	33구****	2020.06.09 10:53:04	법동 285-3 부근 대전중앙병원	2020.06.11	2020.06.18	폐문부재
13	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길 *0(수유동)	57러****	2020.06.10 20:18:35	법동 284-1 부근 주공아파트 211동	2020.06.15	2020.06.18	폐문부재
14	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 3**동 13**호(월평동, 주공아파트)	09저****	2020.06.11 21:53:22	대화동 568-1 부근	2020.06.15	2020.06.22	폐문부재
15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0길 72, *동 2**호(대화동, 세원풍남아파트)	31머****	2020-06-12 00:18:30	대화동 16-3	2020.06.15	2020.06.18	폐문부재
16	이**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4번길 85, 가동 1**호(괴정동, 성수그린빌라)	85버****	2020.06.13 12:25:14	중리동 471 부근	2020.06.18	2020.06.19	수취인불명 (주차방해 안내장)
17	주식회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B동 5**호 대덕비즈센터 (관평동)	72하****	2020.06.05 08:21:57	석봉동 770 부근	2020.06.18	2020.06.19	주소불명

연 번	소유자 (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8	김**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62, 1**동 3**호(와동, 현대아파트)	대전대덕바*** *	2020.06.14 19:48:44	와동 111 부근 현대아파트 102동 805호 앞	2020.06.18	2020.06.25	폐문부재
19	임**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68번길 2, 5**호(의정부동, 스카이파크)	88라****	2020.06.15 08:55:34	신탄진동 216-11 부근	2020.06.18	2020.06.26	폐문부재
20	김**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327번길 19, 2**호(괴정동)	46호****	2020-06-11 21:51:25	대화동 568-1 부근	2020.06.24	2020.06.26	폐문부재
21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83번길 39, 2**호(선화동)	01수****	2020.06.18 20:49:17	비래동 524 부근	2020.06.24	2020.06.26	폐문부재
22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512, 101동 15**호(유천동, 큰솔아파트)	93수****	2020.06.19 07:50:24	오정동 705-7 부근	2020.06.24	2020.06.26	폐문부재
23	강**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161번길 55, 105동 8**호(문화동, 주공아파트)	49도****	2020.06.19 10:51:26	신탄진동 220 부근	2020.06.24	2020.06.29	폐문부재
24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47, 201동 16**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183****	2020.06.20 08:51:39	송촌동 444 부근 선비2단지 202동 앞	2020.06.24	2020.06.26	폐문부재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20. 7. 3. ~ 2020. 7. 17.(14일간)
3. 송달대상

소유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용	구조	위반면적 (㎡)	용도	발생년도	부과예정 금액(원)	비고
오윤*	석봉동 313-1	무단증축	조립식판넬	5.12	창고	2007	179,000	폐문부재
김수*	오정동 233-48	무단증축	컨테이너	18	창고	2018	8,338,000	폐문부재

4. 송달내용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해 자진정비토록 시정요구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43)로 연락 바랍니다.

아울러, 공시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 CITY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우암로	도시가스관 매설	비래동 117-5	90.00	소형고압블록, 투수아스콘	2.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2.4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0.18
2	대덕구 신탄진동로 35번길	도시가스관 매설	신탄진동 123-28	63.00	콘크리트	1.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1.2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0.06
3	대덕구 동산초교로 63번길	도시가스관 매설	오정동 225-7	160.00	아스콘	5.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6.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0.80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17-5 일원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17-5 일원

사 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23-28 일원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23-28 일원

사 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5-7 일원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5-7 일원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 CITY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신탄진로 79 6번길	도시가스관 철거	신탄진동 142 -10	-	콘크리트	2.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4.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
2	대덕구 오정로 89 번길	도시가스관 철거	오정동 300-8	-	아스콘	2.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4.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42-10 일원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42-10 일원

사 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00-8 일원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00-8 일원

사 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독촉) 고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3. 처분이유 : 2019년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내용)	처분 내용
식품소분업	아이엔에스수산 주식회사	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118 (오정동)	2019년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5. 공고기간 : 2020. 7. 3.(금) ~ 7. 20. (월) / 18일간

6. 고지사항

- 공고기간 내 대덕구청 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의 가산금 및 1.2%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증가산금(최고60개월)이 추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 ☎ 042-608-6963).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요금 면제,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주차장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준수사항, 주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7.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전화 : 042-608-6581, FAX : 042-608-3821, E-mail : ygjun0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전용구(전화 : 042-608-65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관리·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일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3. 시·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4. 언론기관의 취재차량
5. 대덕구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중 무료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6. 임산부 보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료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 차량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은 행사 2일전까지 주차장관리 부서장에게 무료주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 부서장은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 승인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서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계좌에 이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운영시간 이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최종 출차 시까지 계산한다.

④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의 오류 또는 기타 주차관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입차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차시간의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에 입차 시간 등을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 관리)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주차요금 계산기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실시하는 부제 운행 준수에 협조할 것
2.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반입하지 않을 것
3.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고,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할 것
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제한 차량의 경우
5.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관리의 변경
2.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차요금(제4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최초 주차시 ~ 1시간 까지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 10분기준)	1일 주차
	최초10분	10분초과후 매10분이내		
무료	100	100	200	2,400